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제조시설 소재지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투입원료 공급업자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 내용	제품명		재질명		
	재생공정 명칭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가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처리절차

